

입법정책브리핑

Legislation & Policy Briefing

제2025-6호

발행일: 2025. 7. 11. (금)

제426회 국회(임시회, 2025. 6. 5. ~ 2025. 7. 4.)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는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정책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 차

1. 개관

2. 주요 법정정책 이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 II

※ 별도의 인용표기가 없는 인용문과 그림 및 도표는 원문을 링크해 두었습니다.

1. 개관

제426회 국회(임시회)는 2025년 6월 5일부터 2025년 7월 4일까지 30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2025년 7월 3일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모두 16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한편, 2025년 6월 5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도 4건의 법률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제426회 국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도 확대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 저탄소 축산구조 전환과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제426회 국회의 2025년 6월 5일과 7월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총 20건의 법률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	법제사법위원회(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3		김건희와 명태균 ·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서영교 의원 · 정춘생 의원 · 정혜경 의원 외 185인
4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용민 의원 · 정춘생 의원 · 정혜경 의원 외 185인
5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용민 의원 · 정춘생 의원 · 천하람 의원 외 188인
6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의원 등 23인
7	국방위원회(4)	군급식기본법안(대안)	국방위원장
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 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0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6)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의원 등 10인
12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의원 등 13인
1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의원 등 10인
16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의원 등 17인
17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의원 등 16인
1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3)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 의원 등 11인
1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 의원 등 16인
20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 II 이슈를 다룹니다.

2. 주요 법정정책 이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 II

개요

지난 3월 13일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던 현행 「상법」 제382조의3 등에 대한 개정안이 4월 1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부결되었고, 이후 관련 법안이 다시 발의되는 등 국회 심의가 재개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의 심사 단계에서 비교적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진 개정 내용은 일명 3% 를 강화 부분이었습니다. 감사위원

회위원 선임·해임에 있어 최대주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관련 3% 룰을 정비하여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위원 선임·해임시 최대주주의 경우 의결권 행사 제한 관련 3% 룰 적용에 있어 항상 특수관계인 등을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감사위원회위원 선임·해임에 있어 최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여 적극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충실의무 범위 해석 등 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지속적 논의, 소송 남발이나 과도한 경영 자율성 제한 우려를 해소할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관련하여 [입법정책브리핑 제2022-11호 물적분할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2025-3호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 내용 참조).

2025년 7월 3일 본회의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며, 대규모 상장회사가 감사위원을 선임·해임할 때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도록 제한하는 등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 [\[경영권분쟁·주주관여대응\] 개정 상법 소개 및 분석](#) 자료 참고).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명문화하여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하도록 하려는 것임. 그리고 현행법은 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업무집행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선임 비율을 3분의 1로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한 일정한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감사위원회의 경우, 최대주주가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해임하는 때에는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 초과 소유 여부를 판단하고 3%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 선임·해임시에는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지 않고 단독으로 3% 초과 소유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이와 같이 해당 감사위원회위원이 사외이사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은 다소 기교적이고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감사위원회위원 선임·해임 안건과 관련하여 최대주주는 항상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 초과 소유 여부를 판	2025-07-03 (원안가결)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단하게 하려는 것임. 뿐만 아니라, 현행법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와는 달리 전자주주총회(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해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전자주주총회를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하되,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한 일정한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함으로써 상장회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책 동향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23. 7. 4.)

- (인수합병) M&A 활성화 지원 및 투자 애로 해소 지속
 - M&A 활성화를 위한 금융·컨설팅 지원¹⁾ 등을 지속하고, M&A 기업과 주주간 이익 균형 등을 위한 상법개정안 마련²⁾
 - 1)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 1.8조원 규모 M&A 전용 유동성지원 프로그램 운용, Cross-Border M&A 전담부서 및 해외데스크(홍콩) 운영(산은) 등
 - 2) (예) M&A기업-주주간 법률관계 합리화, 주주보호 위한 주식매수청구권 확대 등
 - 중소·벤처기업 전용 M&A 플랫폼을 구축하고, 벤처투자 회수 촉진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M&A 활성화 방안* 마련
 - * 민간 M&A 중개·자문 서비스에 대한 중소·벤처기업 접근성 제고 등

출처: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23. 7. 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2025년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 2025. 1. 2.)

- ㉔ (주주가치 제고기반) 투자자 보호 및 지배구조 개선 지속 추진^{역동}
 - 지성파기업 효율적 퇴출 유도 위한 상장폐지 절차 개선*
 - * 상장폐지 심사 시 거래소가 부여하는 최대 개선기간
(코스피 최대 4년, 코스닥 최대 2년) 및 심의단계(코스피 2심제, 코스닥 3심제) 축소
 -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연기금·운용사(현 238개)의 적절한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책임 이행 제고방안 연내 마련
 - 합병·분할시 이사회의 주주 이익 보호규정 신설 등 일반주주를 실효적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 * ①합병 등 결정시 주주의 정당한 이익 고려,
②상장기업간 합병비용 규제개선 및 외부평가공시 의무화,
③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시 공모 신주의 20%를 기존 주주에 우선배정 허용
 -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마무리(25.3)
 - *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대차대주 상환기간담보비율 차이 해소, 공매도잔고 공시 확대 등

출처: 2025년 경제정책방향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공정경제 11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여 주주 전체의 이익이 고려될 수 있도록 원칙 제시
- 일정 규모 이상 회사에서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되어 견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독립이사를 일정 비율 이상 선임하도록 의무화
-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
- 정관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배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활성화
- 대규모 상장회사 전자투표 위임장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유도
- 소수의 지분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하는 경제력 집중 우려 해소

공정경제 12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인수·합병가액 결정 시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고려한 공정가액 적용
~ 합병 과정 등에서 일반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이사회 책임 강화
-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신주물량 일정 배정 제도화
- 기업인수 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하고 소액주주의 회수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공개예수 도입
- 주권상장법인과 계열사 간 합병 시 일반주주가 법원에 감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합병감사인 제도 도입
- 상장회사 자사주에 대한 원칙적 소각 제도화 검토
-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와 제재 강화
~ 일감 몰아주기 및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총수 일가 사익편취 점검 강화
~ 규제 회피 목적의 탈법행위에 대해 부당이익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강화

출처: 제21대 대통령선거 정당정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참고 자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안: 직무수행 시 이사가 부담하는 의무의 구체화 등](#) 2024. 11.

[박주민 의원안 등: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부과 등](#) 2024. 8.

[2025년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법무부 누리집

[2025년 금융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금융위원회 누리집

[주주 보호 및 기업가치 제고 관련 참고사항](#)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주주환원 정책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2025. 3. 17.

1. 국내 상장기업 가치 제고 방안(밸류업 프로그램) 중 하나로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주환원 확대는 장기적·안정적인 투자유인을 높일 수 있으나, 여유자금 감소로 기업 투자가 제약될 소지도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주주환원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 G20 회원국 중 16개국과 비교하여 파악한 결과, 국내 상장기업 기업가치는 성장성과 안정성 대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지배구조 및 정부규제가 주주이익을 보호하는 정도 역시 취약하며, 유동주식 비중도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 상장기업의 주주환원율(배당, 자사주매입)이 낮았으나, 현금성자산 보유 역시 활발한 자본적 지출(설비투자, 연구개발 투자)로 인해 주요국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주주환원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① 주주보호 수준이 높을수록 주주환원은 확대되고 현금성자산 보유규모는 축소되었다. 이는 일반주주의 권익이 강화될수록 기업이 주주환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반면, 반대의 경우 지배주주 혹은 경영자 재량으로 보다 쉽게 사용 가능한 현금보유 유인이 커지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또한 ② 기업의 주주환원은 기업가치와 양의 관계를 보인 가운데 현금성자산은 주주보호 수준이 높은 경우에만 기업가치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투자자는 주주환원이 높은 기업을 선호 하며, 주주보호가 취약한 기업의 현금성자산은 기업가치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주주환원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그룹 · 산업별로 추정된 결과, ③ 주주보호 취약그룹에서 주주환원 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고 ④ 대규모 자본적지출이 필요한 산업에서는 주주환원의 기업가치 제고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4. 한편, 위의 실증분석 결과에서 기업의 자본적지출은 주주보호 또는 주주환원 정도와 관계없이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업의 활발한 투자활동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지지하고 있다.

5. 이러한 분석 결과는 주주보호 취약 기업을 중심으로 주주환원 확대가 기업가치 제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기업에 대한 시장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주주환원 확대, 투자계획 공시 등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나 이 과정에서 주주환원이 생산적 투자기회에 대한 자본적지출을 제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성장 속도가 빠른 산업의 경우 주주환원 확대보다 자본적지출을 통한 수익성 · 성장성 개선이 기업가치 제고에 보다 바람직 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주주충실의무 논란에 대한 해결책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논단」 2025. 4. 7.

주주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현행 상법과 동일한 규정 체계를 갖추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 이사에게 주주 전체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부과함과 아울러,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업무상 배임죄의 합리적 조정, 적대적 M&A 방 어에 대한 판단기준 정립, 상속세제 정비 등 종합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때이다. 혁신적인 경영을 보장하고 투자 자의 정당한 이익도 함께 보호하는 법체계가 수립되길 기대한다.

(사)지평법정책연구소 ·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장)
02-6200-1770
leekh@jipyong.com



임성택 변호사
02-6200-1746
stlim@jipyong.com



윤영규 변호사
02-6200-1743
ykyun@jipyong.com



김진권 변호사
02-6200-1812
jkkim@jipyong.com



박성철 변호사
02-6200-1777
scpark@jipyong.com



신용우 변호사
02-6200-1974
ywshin@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02-6200-1841
cwmin@jipyong.com



이춘희 선임연구위원
(지평법정책연구소)
02-6200-0628
chy@jipyong.com

지평법정책연구소 ·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 입법정책브리핑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조사 참여 링크](#)).